

사법제도 개선안 II

〔사법정책자문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〕

- 2023년부터 법조일원화 전면적 실시(10년 이상 법조경력)
-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 시행
- 항소심(지방법원 항소심 포함)에 대등 경력법관 배치
- 신설 가정법원에 법조경력 10년 이상 가사전문 법관 배치
-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관할 집중을 통한 전문성 강화

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구체적인 사법제도개선안 실행 계획

□ 전면적 법조일원화 실시 - 2023년(법조경력 10년 이상)

- 이미 시행 중인 법조경력자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부터 신규 임용 법관 전부를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충원
 -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생은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
 - 현행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의 경우 2022년까지 법조 경력 5년 이상을 요구
- 법조일원화로의 성공적 이행 여건 조성
 - 법관 처우의 획기적 향상 필요 : 법관 확보 위해서는 법관 처우개선 필수
 - 별도의 법관 보수 체계 마련 : 검사 보수 체계와 분리
 - 재판연구관 제도 신설 : 재판의 질과 효율성 저하 방지

□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 시행

-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실시와 동시에 법관 임용 시부터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구별

- 고등법원 부장 제도 폐지

○ 다만, 기존 법관들은 종전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선발되었으므로, 다음과 같은 방식의 이원화 방안 검토

-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을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구분

- 현재와 같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간 순환·교류 인사는 지양

○ 이원화 방안 시행 시부터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대등경력 법관을 배치하여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역량도 강화

-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원화 시행 시 자연스럽게 대등경력 법관으로 구성됨

□ **가정법원 구조 개편**

○ 가정과 청소년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, 법적 쟁송의 해결을 넘어 치료사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단 고등법원 소재지에 가정법원 설치

- 장기적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

○ 신설되는 가정법원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된 가사전문법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가정법원 역량 강화

- 가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10년 이상된 법조경력자를 전문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 추진

□ **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관할 집중을 통한 전문성 강화**

○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경우,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사소송법 상의 일반 원칙에 따른 관할 이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을 중복하여 인정

- 특허, 상표, 실용신안, 디자인에 관한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소송 등 지적재

산권에 관한 행정소송은 특허법원이 1심(현행 제도와 같음)

- 특허, 상표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1심은, 민사소송법 일반 원칙에 따른 관할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을 중복하여 인정 → 2심은 1심 처리법원에 따라 그 직근 상급법원인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관할

예) ① 1심 :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→ 2심 : 서울고등법원

② 1심 :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→ 2심 :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

③ 1심 : 부산지방법원 합의부 → 부산고등법원